

정 관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정관

2003. . . 제 정
2009. . . 일부개정
2010. 2. 20. 일부개정
2013. 2. 16. 일부개정
2018. 3. 09. 전부개정
2021. 10.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약칭은 “KAWA”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인간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동물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게 하고, 나아가 인간에 의해 이용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동물의 수(數)와 종(種)을 줄여 감으로써, 인간과 동물이 생태적, 윤리적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법인은 문화, 산업, 교육 등의 영역에서, 동물에게 가해지는 잔혹 행위를 방지하고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동물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룬다.

제3조(소재지, 지부와 센터)

- ①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17길 1-77에 둔다.
- ② 법인은 지역별로 지방운동본부(이하 “지부”라 한다)를 두거나, 세부 목적

별로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지부나 센터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홍보 등의 사업
 2. 유기되거나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하거나 보호하고, 동물이 유기되거나 학대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등의 사업
 3. 동물보호, 동물복지 등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러한 정책에 관하여 제안을 하는 등의 사업
 4. 사람과 동물 사이의 바른 동거 문화를 정착하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는 등의 사업
 5.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관하여 조사·연구하고, 이를 위하여 국내·외 연대활동을 하는 등의 사업
 6. 동물보호, 동물복지 등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에 위탁하는 사업
 7. 동물보호, 동물복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또는 그러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각 지원하는 사업
 8. 법인의 목적과 관련된 공익소송, 소송구조, 법률자문·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사업
- ② 법인은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동물병원
 2. 동물보호교육
 3. 반려동물카페
 4. 도서출판사업
 5. 홍보제작물의 판매사업
 6. 기타 총회 의결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된 수익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 ① 회원은 법인의 목적을 지지하여 이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 또는 사람으로 한다.
- ②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 ③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회원으로 한다. 다만, 정회원의 총 수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총회에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아래 제4호를 충족하지 아니한 정회원은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법인에 가입한 지 5년 이상인 회원
 2. 법인에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기간이 55개월 이상인 회원
 3. 법인에 납부한 총 후원금을 제1호의 기간에 따라 환산하였을 때, 후원금액이 월 평균 1만 원 이상인 회원
 4. 현재, 월 3만 원 이상의 정기 후원금을 납부하고 있는 회원
- ④ 후원회원은 후원금을 납부하고 있는 회원으로 한다.
- ⑤ 총회에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제4호를 충족하지 아니하여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다시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회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가입, 탈퇴, 후원금 등)

- ①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 또는 사람은 법인이 정한 정회원 가입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이 정관 규정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이사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근거를 들어 승인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 ② 후원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 또는 사람은 법인이 정한 후원회원 가입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언제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법인이 정한 탈퇴신청 절차를 완료

함으로써 법인을 탈퇴할 수 있다.

④ 후원금의 종류, 납부 방법, 납부의 예외와 유예 등 후원금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제2항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총회의결권(총회의 구성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

② 후원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법인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가 되기 위한 피선거권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을 포함하여 법인이 정한 모든 규정의 준수

2.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준수

3.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4. 법인과 다른 회원의 명예에 대한 존중

5. 후원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자격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사망 또는 해산

3.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서, 이사회가 의결한 때

4. 그 밖에 법인에 불이익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총회가 의결한 때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회원이 이미 납부한 후원금, 수수료 등 일체의 금전과

재산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해당 회원은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대표이사를 포함한다)
3. 감사 1인 이상 3인 이하

제11조(임원의 선임, 보선 등)

- ① 대표이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 ③ 임원의 사임, 퇴위, 유고 등으로 인하여,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최소 인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각 보선하여야 한다. 이 때, 대표이사를 보선하기 위한 이사회는 이사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주재한다.
- ④ 이사회를 구성할 때 정회원인 이사의 수는 재적 이사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재적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 ①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되,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자로서 면책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배임, 횡령, 사기 등의 경제범죄 또는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5.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확정된 자
6.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집행의 유예 여부는 불문한다)이 확정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목적의 활동으로 인하여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로서 이사회가 의결한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가 일시적 또는 계속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해소될 때까지 이사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 또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대표이사, 이사회, 총회 등의 각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하거나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대표이사, 이사회, 총회,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에 따라 보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이사회, 총회 등의 각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사회 또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④ 감사는 법인의 이사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5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명백하게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2. 임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 또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회계부정 등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3. 법인의 사업 또는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경우
4.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대표권의 제한)

- ① 대표이사만이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지며, 다른 이사 등 임원은 법인을 대표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등에 따라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그 직무대행자만이 법인을 대표한다.

제17조(고문 등)

- ① 법인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 자문위원, 명예대표이사, 명예이사 등(이하 “고문 등”이라 한다)을 추대할 수 있다.

- ② 고문 등은 이사회에 나아가 상정된 안건을 검토하고, 그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심의와 의결에 앞서 제2항에 따른 고문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개최 등)

- ①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해당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다음 회계연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제14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요구하는 경우
 4. 재적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며 청구하는 경우

제19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한다. 다만, 제18조 제4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구 또는 청구가 있은 후 2주 이내에 대표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끊지 아니한 때에는, 요구를 한 이사 중 1인 또는 감사가 직접 총회를 소집하거나, 총회의 개최를 청구한 회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과 의안의 요령(이하 “총회 안건”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각 정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거나, 문자메세지 등 휴대 전화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전자 전송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된 총회 안건에 대하여서만 의결한다.

제20조(총회의 권한과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이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 및 법인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취득 등(해당 재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하거나 교환하거나 임대하거나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업 또는 영업을 양수하거나 자금을 차입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사업계획, 사업실적, 예산, 결산 등에 관한 사항
6. 법령이나 정관, 법인의 각종 규정에 따라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는 법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등)

-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정회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정회원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 자여야 하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온라인 총회)

- ① 총회는 정회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한 정회원은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고, 거수, 투표, 기타 적절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2조(의사록의 작성)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권의 제한)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또는 해임에 있어서 해당 임원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등 재산의 수수나 거래와 관련하여 임원 또는 회원 자신의 이해가 법인의 이해와 충돌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개최 등)

-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재적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1.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제14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요구하는 경우

제25조(이사회의 소집 등)

- ① 이사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한다. 다만, 제24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이사나 감사의 요구가 있은 후 1주 이내에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의 절차를 끊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 개최 요구를 한 이사 중 1인 또는 감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과 의안의 요령(이하 “이사회 안건”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각 이사와 감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거나, 문자메세지 등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전자 전송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된 이사회 안건과 회의 도중에 이사 또는 감사의 요청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의결한다.
- ④ 본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와 감사 전원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가 있는 경우, 제2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의 권한과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법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취득 등(해당 재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하거나 교환하거나 임대하거나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업 또는 영업을 양수하거나 자금을 차입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2. 보통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상정해야 할 안건에 관한 사항
4. 대표이사,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의결되었거나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권한 정지, 회원의 자격 상실 등에 관한 사항
8. 법령이나 정관, 법인의 각종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그 밖에 대표이사가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는 법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온라인 이사회)

- 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한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고, 거수, 투표, 기타 적절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9조(의사록 작성)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의장, 출석한 이사, 출석한 감사가 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사무처, 전문위원회



제30조(사무처)

법인은 법인의 운영이나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무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이 때 사무처의 구성과 직제, 사무처 직원의 보수 등 세부적 사항에 관하여서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전문위원회)

- ① 법인은 제4조의 각 사업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목적으로 별로 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 ③ 각 전문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세부적 사항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산, 회계 등

제32조(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당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취득 등(해당 재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하거나 교환하거나 임대하거나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업 또는 영업을 양수하거나 자금을 차입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경비의 재원)

법인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후원금
2. 기부금 또는 찬조금
3. 재산 또는 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4. 차입금
5. 그 밖의 자금

제35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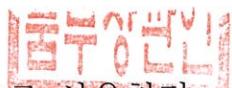
제36조(사업계획, 사업실적, 예산, 결산 등)

- ①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 초에 사업계획과 예산을 정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②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하여 다음 회계연도 초에 감사의 감사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총회에 보고된 결산보고서(연간 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7조(감사와 회계감사)

- ① 감사는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또는 법인의 감사를 통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③ 제1항의 정기감사는 제2항의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재원의 사용)



법인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4조의 각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또는 운영경비
2. 상근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비상근임원에 대한 실비 지급, 그들의 사무를 위해 쓰이는 비용
3. 법인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사용하기로 의결한 비용

제39조(주무관청에 대한 보고)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다만, 주무관청의 규칙이나 지침, 관계 법령 등에 의해 기한이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
2. 감사의 감사결과보고 또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의 회계감사결과보고

3. 해당 회계연도 말일 기준의 회원 명부
4.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장 정관변경, 해산 등

제40조(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과,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총회 의결을 각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과,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 의결을 각 거쳐야 한다.

제42조(清算인, 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 ① 제41조에 따라 총회에서 법인의 해산을 의결한 때에는 청산인이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대표이사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다만,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주재한 이사회에서 선임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 ③ 청산인은 재산현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법인이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 귀속시킨다.

제10장 보칙

제43조(법인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법인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필요한 경우 정관의 규정과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준용)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 민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 칙 <2003. . . 제정>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 . 일부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개정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20. 일부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개정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16. 일부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개정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9. 전부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개정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0. 일부개정>

(시행일) 이 정관은 개정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기본재산 목록

2021. 8. 31. 현재 법인의 기본재산은 아래와 같다.

- 현금 : 33,746,670원
- 토지 : 3,172,394,584원
- 합계 : 3,206,141,254원

위와 같이 정관을 허가합니다.

2021. 10. 20.

농 림 축 산 식 품 부

